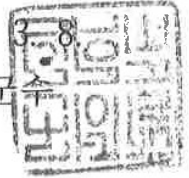


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(재계약)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226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3. 8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보고이유

-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심의·의결 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,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5항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

3. 운영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221
- 나. 규 모 : 연면적 2074.2㎡(지상1층, 3동), 대지 7,598.2㎡
- 다. 위탁기간 : 2023. 3. 17. ~ 2028. 3. 16.
- 라. 보 조 금 : 726백만 원(시비 676, 군비 50)
- 마. 수 탁 자 : (사)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
- 바. 종 사 자 : 59명(직원11명, 근로자 48명)

4. 재계약 경위

- 가. 2023. 2. 9. : 재계약 신청서 접수
- 나. 2023. 2. 15.~ 16. :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위탁심의위원회 심의
 - 결과 : 운영평가 점수를 평균 70점 이상 득하여 재계약 의결
 - 재계약 기간 : 2023. 3. 17. ~ 2028. 3. 16.

참고

상위 및 관계 법령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9조(재계약)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6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.